보험금

[서울고등법원 2012. 2. 1. 2011나27563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

【피고, 항소인】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) 【제1심판결】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2. 17. 선고 2009가합12498 판결 【변론종결】2011. 12. 21.

【주문】

]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 1에게 26,730,000원, 원고 2에게 10,619,421원, 원고 3에게 29,625,000원, 원고 4에게 14,850,000원, 원고 5에게 1,951,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. 10. 14.부터 2012. 2. 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- 2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%는 같은 원고가, 그 나머지는 피고가,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%는 같은 원고가, 그 나머지는 피고가, 원고 3,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,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%는 같은 원고가,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5,000,000원, 원고 2에게 33,000,000원, 원고 3에게 30,000,000원, 원고 4에게 금 15,000,000원, 원고 5에게 2,6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1, 2, 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3, 4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5,000,000원, 원고 2에게 33,000,000원, 원고 3에게 30,000,000원, 원고 4에게 금 15,000,000원, 원고 5에게 2,6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1, 2, 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3, 4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5,000,000원, 원고 2에게 33,000,000원, 원고 3에게 30,000,000원, 원고 4에게 금 15,000,000원, 원고 5에게 2,6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1, 2, 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3, 4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5,000,000원, 원고 2에게 33,000,000원, 원고 3에게 30,000,000원, 원고 4에게 금 15,000,000원, 원고 5에게 2,6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1, 2, 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3, 4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[이유]

】1. 기초사실

- 나. 원고 2는 2007. 10. 23.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2, 보험료를 월 2,500,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미래에셋 △△△△ △△△ △△△○◎◎◎◎◎◎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제2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그 때부터 2009. 3. 16.까지 보험료로 44,550,000원을 납입하였고, 2009. 4. 21. 납입보험료의 일부인 12,000,000원을 중도에 인출하였다. 다.

- 마. 원고 5는 2008. 12. 19.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료를 월 667,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미래에셋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종신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제5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보험료로 1,951,860원을 납입하였다.
- 바. 한편, 원고 1이 체결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원고 2가 체결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위 원고들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각 실효되었고, 원고 2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0. 4. 27. 피고로부터 실효환급금으로 14,850,965원을 지급받았다.

【이유】

】1. 기초사실

- 나. 원고 2는 2007. 10. 23.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2, 보험료를 월 2,500,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미래에셋 △△△△ △△△ △△△◎◎◎◎◎◎◎◎ 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제2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그 때부터 2009. 3. 16.까지 보험료로 44,550,000원을 납입하였고, 2009. 4. 21. 납입보험료의 일부인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12,000,000원을 중도에 인출하였다.

다.

- 바. 한편, 원고 1이 체결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원고 2가 체결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위 원고들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각 실효되었고, 원고 2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0. 4. 27. 피고로부터 실효환급금으로 14,850,965원을 지급받았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